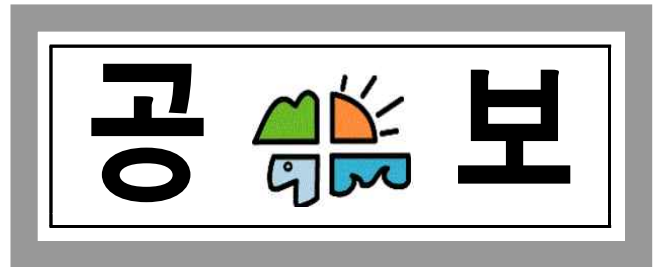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83호 2022년 4월 28일(목)

입법예고

-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면평가 운영계획 반영을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 근거 규정 신설(안제32조~제36조)

-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결과의 활용 등 조문신설

나.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제6조제3항, 안 별지제1호서식)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관련 문구 삭제(안제15조제5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석사학위소지자의 임

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조문 삭제에 따라, 규칙 제15조제5항의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조문 삭제

라.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직류 자격요건 정비(안별표7, 안별표10, 안별표13)

- 수도토목 직류 자격증 신설(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 일반농업 직류 자격증 추가(화훼장식 산업기사)
- 의료기술 직류 자격증 추가(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마.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자격기준 비고 추가(안별표8)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

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 현행화(안별지제2호 서식, 안별지제3호 서식, 안별지제5호 서식, 안별지제7호 서식, 안별지제8호 서식)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140, 팩스 033-639-2590, 전자문서 gh91122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한다.

제15조제5항 전단 중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제4장(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다면평가

제32조(다면평가의 실시)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다면평가의 방법) ①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과 개인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다면평가의 절차) ①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해진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가 게재한 업무추진실적 및 과거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다면평가 운영) 평가대상과 평가항목 설정, 평가위원 구성 등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별표 7 제1호 중 농업의 일반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별표 7 제1호 중 시설의 일반토목란 다음에 수도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별표 7 제2호 중 의료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1)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1)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	---	---	---	--

별표 8 제2호 및 제3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 중 농업의 일반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별표 13 가목 중 농업의 일반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	-------------------------------

별표 13 가목 중 시설의 일반토목란 다음에 수도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중 비고란의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제2호의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 작성요령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응시원서 작성요령 비고란의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임용권자)”로 하고,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제3호가목 (7)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중 임용후보자명부 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5호서식 중 응시자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에는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제목 중 “공개경쟁채용”을 “공개경쟁임용”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의 제목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u>수급자</u> 또는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 ----- - <u>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u> ----- -----.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 시자격) ① ~ ④ (생략)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 시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 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 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u>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 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 사”로 본다.</u>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 ----- ----- ----- ----- ----- <u>한다.</u> -----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다면평가
<신 설>	제32조(다면평가의 실시) 임용권자

<신 설>

<신 설>

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다면평가의 방법) ①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과 개인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④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다면평가의 절차) ①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 추진실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해진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가 게재한 업무추진실적 및 과거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다면평가 운영) 평가대상과 평가항목 설정, 평가위원 구성 등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